
2022년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수정 (자유공모)

2022. 6.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2022년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재공고 수정 (자유공모)

충남지역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2022년도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기존공고를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 **변경내용 : 지원규모 조정**(지원금 규모 및 선정 과제수)

※ 당초 200,000천원 이내, 3개 과제 → **(변경) 최대 180,000천원, 1개 과제**

| 구 분 | 당초(제2022-32호, '22. 6. 20.) | 변경(제2022-33호, '22. 6. 22.) |
|---------------------------|--|--|
| (당초 4p, 변경 4p) 라. 지원규모 | <p>라. 지원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도 지원 사업비: 560,000천 원 이내 '23년, '24년도 동일 규모로 지원 - 지자체 연구개발 지원금은 컨소시엄 당 연간 최대 200,000천 원 이내 신청 가능.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교부금은 조정될 수 있으며, 우수 컨소시엄에게는 최대 50,000천 원까지 연구개발비 증액 교부 | <p>라. 지원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과제 컨소시엄 ○ '22년도 지원 사업비 - 최대 180,000천 원('23년, '24년도 동일 규모로 지원예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교부금은 조정될 수 있음 |

1. 사업 목적

- 충청남도의 미래 중점사업 영역인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발굴 육성과 선제적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 선점과 지역 미래산업 활성화
- 본 과제는 충청남도 지역 유망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출연사업비로 추진되는 과제임

2. 사업내용

가. 지원분야 : 에너지산업 전 분야

-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에너지·자원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을 자유공모 형식으로 지원
 - 산업기술분류표 에너지·자원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의 국산화 연관 소재/부품 부문(실현기술단계 : TRL 7이상)
- ※ 단, 산업기술분류표 에너지·자원 부분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중분류)은 제외

나.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지의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3개 이내 참여기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 * 주관연구기관의 본사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간에 따라 가산점 부여하며, 충청남도 소재 기업참여 원칙임
 - 본 과제는 중소기업 육성과 유망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의 자체 출연사업비로 추진되는 과제이므로,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컨소시엄형으로 사업을 진행
 - ※ 충청남도 내에 본사가 위치하여야 하며, 본사 외 사업장 보유 시 충청남도에 하나 이상의 사업장이 위치하여야 함 (서류 접수 시, 증빙必)

- 참여기관으로 대·중견기업, 공기업, 기관(비영리), 대학 등 참여 가능
- ※ 참여기관은 충청남도 외 소재 기관(기업)도 참여 가능함

다.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해당연도 말 중간점검 컨설팅을 진행
- 모든 신청 컨소시엄은 총 연구개발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당해연도(2022년) 사업기간 : 협약일(2022. 7. 1. 소급)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라. 지원규모

- 1개 과제 컨소시엄
- '22년도 지원 사업비
- 최대 180,000천 원('23년, '24년도 동일 규모로 지원예정)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교부금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지원조건

- 과제 총 사업비: 지자체 출연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 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8조제2항)」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기준에 준하여 민간부담금 부담

-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현금, 현물 매칭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며, 현금부담비용은 총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임
- 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해당 중견기업은 민간부담금으로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매칭하며, 총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으로 출자해야 함
- 대기업(민간 및 공사 포함)이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67% 이상을 매칭하며, 민간부담금의 60%이상 현금 출자 필수
-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은 필요 시 부담할 수 있음

※ 사업비 재원(최소요건 사례)

단위: 천원

| 컨소시엄 | 재원 | 지방비 (출연금) | 민간(매칭) | | 민간자금계 | 총사업비계 |
|-----------------|----|--------------|--------|---------|----------------|----------------|
| | | | 현물 | 현금 | | |
| 중소기업+(비영리) | | 180,000 | 40,500 | 4,500 | 45,000 | 225,000 |
| 중소기업+중견기업+(비영리) | | 180,000 | 61,290 | 6,810 | 68,100 | 248,100 |
| (예시)중소기업 | | 100,000 | 22,500 | 2,500 | 25,000 | 125,000 |
| (예시)중견기업 | | 80,000 | 38,790 | 4,310 | 43,100 | 123,100 |
| 중소기업+대기업+(비영리) | | 180,000 | 87,500 | 100,000 | 187,500 | 367,500 |
| (예시)중소기업 | | 100,000 | 22,500 | 2,500 | 25,000 | 125,000 |
| (예시)대기업 | | 80,000 | 65,000 | 97,500 | 162,500 | 242,500 |

바. 참여인력 요건

- 과제 참여인력 요건은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 사업의 참여연구원 참여율은 최소 20% 이상(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30% 이상)이어야 함. 단,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가

-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기업의 임원 이상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 참여기관 책임자는 기업의 부장(기관의 팀장)급,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신청 가능
 - 참여연구원은 참여기관(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진, 기관연구진, 대학의 학·석·박사과정, 박사후 과정, 계약교수 등 가능
- ※ 본 시행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요건은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름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22. 6. 20.(월) ~ 7. 1.(금) 18:00

신청기간 : 2022. 6. 21.(화) ~ 7. 1.(금) 18:00

나. 신청방법: 전문기관(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2022. 7. 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2022. 7. 1.(금) 13:30 ~ 18:00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USB에 담아, 인쇄본 10부와 함께 제출

○ 제출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1층 D105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 김선영

다.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 일체

| 구분 | 내용 | | 수행기관 |
|---------------|---|--|----------------|
| 연구개발 계획 접수 | - 필수 및 해당서류 제출(오프라인) ※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
| | 필수 | 1. 연구개발계획서 2. [첨부1] 선행기술조사 요약보고서 3. [첨부2] 정부과제 참여현황 확인서 4. [첨부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5. [첨부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해당 | 1. [첨부5]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2. [첨부6] 신규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3. [별첨] 연구장비도입계획서 | |
| | 증빙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과거 변동사항 모두 포함),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대기업은 편입 및 제외 공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 |
| 요건검토 | 수행기관 제출서류 확인 | | 전문기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내에만 미비 서류 보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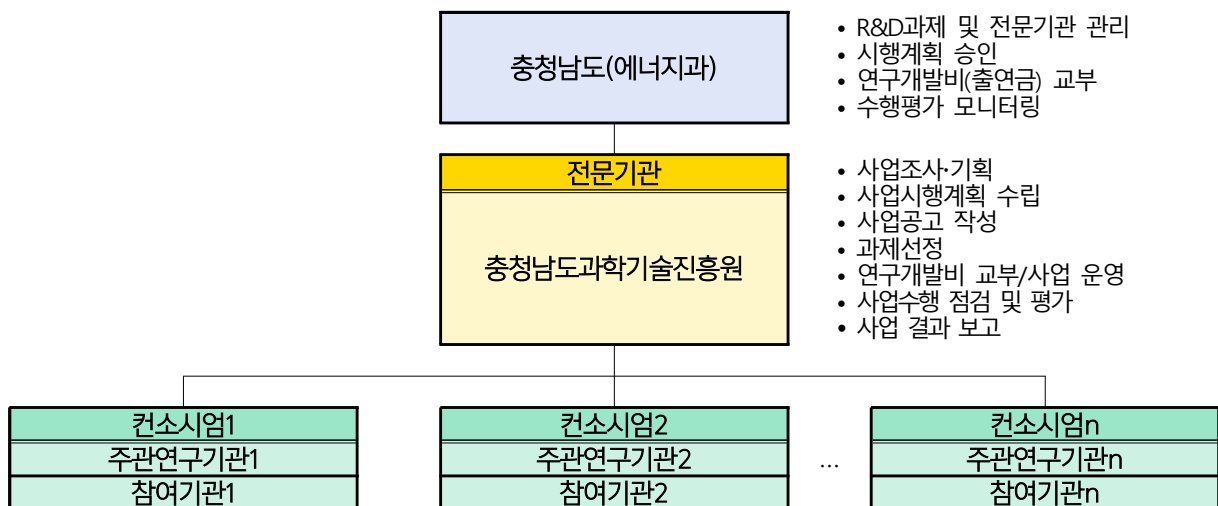
라. 사업문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및 사업 문의

- 담당자 김선영 연구원 : 041-540-3815, goforit@ciast.re.kr

4. 사업추진

가. 추진 체계



- R&D과제 및 전문기관 관리
- 시행계획 승인
- 연구개발비(출연금) 교부
- 수행평가 모니터링

- 사업조사·기획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공고 작성
- 과제선정
- 연구개발비 교부/사업 운영
- 사업수행 점검 및 평가
- 사업 결과 보고

- R&D과제 주관 및 연구개발 수행
- 착수보고, 월별진도점검, 중간점검컨설팅, 최종평가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관련 보고서 제출

나. 추진 일정

| 구분 | 내용 | 주체 |
|--------------------------|---|----------------------------|
| 사업 공고 및 안내 (22.6.20.) | •신규과제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설명회(필요시), 공고문 - 온라인) | 전문기관 |
| ↓ | | |
| 계획서 제출 (22.7.1.) | •(수행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제출(파일 및 인쇄본 10부 제출) | 전문기관 수행기관 |
| ↓ | | |
| 선정평가 (7월초 ~ 7월 중) | •요건검토→전문가평가(서류→발표평가) •사업수행 여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
| ↓ | | |
| 협약 및 과제수행 (7월말) | •세부협약(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연구계획에 의거 과제 착수보고 •월별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수행기관(컨소시엄) |
| ↓ | | |
| 중간점검 컨설팅 (12월 중) | •당해년도 연구개발 성과 점검(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당해년도 사업비 정산(주관연구기관→전문기관) •당해년도 연구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전문기관→충청남도) |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충청남도 참관) |

-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중간점검 컨설팅 결과 사업진행 및 성과가 미비할 경우, 특별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협약 해지 또는 차년도 사업비는 삭감될 수 있음

○ 전체 사업일정

| 구분 | 2022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 사업기획 및 공고 | | | | | | | | | | | | | | |
| 협약 및 과제 수행 | | | | | | | | | | | | | | |
| 상시점검 | | | | | | | | | | | | | | |
| 중간점검 컨설팅 | | | | | | | | | | | | | | |
| 최종평가 | | | | | | | | | | | | | | |

나.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2022.07.01. ~ 2024.12.31.(총 3년, 3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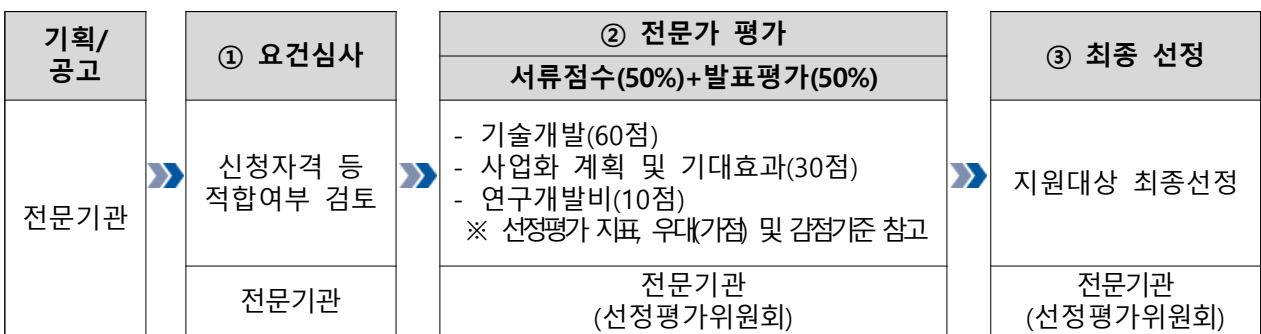
-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협약을 1회 진행하고, 협약기간 중 ‘중간점검 컨설팅(2회)’, ‘최종평가(1회)’ 를 진행하여 평가를 최소화함
- 상시점검을 통해 과제수행 중 애로사항 및 과제 추진상황 확인

○ 2022년 사업기간: 2022.07.01. ~ 2022.12.31.(6개월)

- 2022년 사업은 착수보고, 중간점검 컨설팅 및 상시점검(월별 보고) 진행 예정

5. 선정평가

가. 평가절차



나. 선정평가 지표

| 중분류 | 소분류 | 평가항목 | 배점 |
|----------------|------------|--|------------|
| 기술개발 계획 | 지원분야 적합성 | · 제안 주제의 지원분야 부합성 · 충남지역 산업 기여도 | 10 |
| | 기술개발 개요 | · 기술개발성과와 사업목적 부합성 · 기술개발 차별성, 질적 우수성 · 선행 제품(기술)의 문제 인식 | 10 |
| | 사전준비 및 능력 | · 사전준비 우수성(선행기술조사) · 기술개발실적 우수성 · 핵심(원천) 유사 기술 보유 정도 ·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 | 10 |
| | 추진체계 | ·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 수행기관별 역할분담 적정성 | 10 |
| | 연구자원 | · 수행기관 역량과 능력 보유 · 참여연구원 역할분담 적절성 · 신규인력의 채용 여부 | 10 |
| | 목표 추진내용 | · 정량화 목표 및 방법 제시 여부 · 제시목표의 질적 우수성 · 연차별 계획과 내용의 실현 여부 · 기술적 방법 타당성 | 10 |
| | 소 계 | | |
|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전략 우수성, 시장 예측, 분석 타당성 · 개발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15 |
| | 매출효과 | · 매출목표 타당성, 실현 가능성 · 신규시장 창출, 해외 진출 가능성 · 국산화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 | 5 |
| | 수출효과 | · 수출목표 타당성, 실현 가능성 | 5 |
| | 고용효과 | · 고용목표 타당성, 실현 가능성 | 5 |
| | 소 계 | | |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편성 | · 연구개발비 산정의 부합성/타당성 | 10 |
| | 소 계 | | |
| 합 계 | | | 100 |

※ 우대(가점) 및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수행기관 선정

○ 우대(가점) 및 감점 기준

| 구분 | 우대 및 감점 기준 | 배점 |
|----|---|--------|
| 가점 | ○ 최근 2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보유 1건당 1점) | 최대 +4 |
| | ○ 참여기관에 중견기업(대기업, 공사 포함)이 포함되어 총사업비의 50%이상 매칭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한 경우 | +3 |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1 |
|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1 |
|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기관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2 |
|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본사가 충청남도 내에 4년 이상 소재한 경우 (매년 0.5점씩) | 최대 +2 |
| | 소계 | 최대 +5점 |
| 감점 | ○ 최종평가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 -1 |
|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1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1 |
| | 소계 | 최대 -3점 |

6. 협약

가.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은 평가의견을 반영한 협약용 연구 개발계획서를 별도 제출 후 협약을 체결함
-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요령」에 따라 3년(30개월) 협약을 체결함

나. 협약 및 변경, 해약

-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요령」 제20조(협약의 변경) 및 21조(협약의 해약)에 따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기술개발사업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양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작성해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 특히,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국내외 기관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에 알려야 함(참여기관을 포함).
 - ※ 협약변경은 연구개발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 참여기관의 협약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과제 협약 변경 요청 시에는 수행기관(기업, 기관) 간 미리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함
- 참여기관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관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으나, 변경된 참여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의 과제 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함
- 선정 이후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을 해약함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부도 및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됨

7.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가. 연구개발비의 지급

- 연구개발비 구성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 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지급 :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주관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 : 협약체결 후 1개월 내,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급 ※ 단, 연구개발비 지급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 제출서류 : 연구개발비 교부신청서 및 기타서류
 - ※ 연구개발비 교부신청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민간현금 매칭자금 입금증 등을 함께 제출

나.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사항

- 인건비: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기타 기관의 책임 및 참여연구원은 현물 계상이 원칙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며,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인건비 계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 (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청년의무채용을 유지 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하여야 함 나.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다.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2호에 따름 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마.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도 지원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자.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소유로 하는 사업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
|---|

- 학생인건비는 월별 학생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0천 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 1,800천 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 2,500천 원 이상 산정

※ 학생인건비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이며,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건비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함.

○ 간접비: 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하고, 비영리기관 및 대학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간접비 고시비율을 곱한 값으로서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름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 및 대학의 경우 17% 이내로 산정

※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산정기준, 연구비의 사용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31조에 따름

다. 연구개발비 관리

○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연구 책임자가 발의하고 연구개발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능

- 연구개발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 별도 관리 필수

○ 연구개발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기술료 징수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징수대상임

○ 관련규정 준수 의무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 시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와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과 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즉시 보고해야 함

라. 연구개발비 정산

- 주관연구기관은 규정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에 따라 모든 연구개발비를 사업기간 중 집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자체회계감사를 통해 이를 점검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종료 시,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명세를 포함한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집행의 합목적성 여부 및 관리상태
 - 관련 규정 및 협약서상의 제반 규정 준수 여부
 -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의 구비현황 및 적정성 여부
- ※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서식 제5호~9호 양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제출

8. 유의사항

가.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은 사업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제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과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과제

이내인 경우만 신청 및 참여 가능

○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참여기업만 신청 및 참여 가능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NTIS 내 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검색을 통해 도출된 검색결과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제시(연구개발계획서 내 반영)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검색(2012년 이후) 검색 결과 연구개발계획서 내 반영

9. 기타사항

가. 보안사항

- 기술개발과제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인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나. 적용 규정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충청남도 에너지조례」에 근거하고,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아래 근거 규정 및 요령을 적용

- 관련 근거 규정

| 번호 | 관련규정 | |
|----|-----------------------------------|-----------------------|
| 1 | 충청남도 에너지산업 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 충청남도 고시 제2022-39호 |
|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
| 3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호 |
| 4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호 |
| 5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0호 |
| 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 |
| 7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
| 8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4호 |
| 9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 |